

고 시

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8 - 94호

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77호(2007.06.07)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173호(2008.05.22)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65호(2016.06.16)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97호(2017.03.16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7-71호(2017.07.20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은평구 수색동 341번지 일대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7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09월 27일

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종 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나. 명 칭 :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341번지 일대
- 나. 면 적 : 69,681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가. 성 명 :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: 주재성)
- 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268, 3층(수색동)
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8년 09월 19일

5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
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1) 건축계획

용도	대지면적(㎡)	동수	층수	세대수	건축 연면적(㎡)	비고
주택	소계	54,482.125	21	지하6층/지상20층	1,402	226,075.55
	분양	54,482.125	21	지하6층/지상20층	1,124	226,075.55
	임대				278	
상가	607.875	—	지하5층~6층	—	2,522.40	

2) 토지이용계획

(단위 : ㎡)

합계	택 지				공공시설					
	소 계	공동주택	단독주택	그 밖의 건축시설	소 계	도 로	공원	녹지	사회복 지시설	문화 시설
69,681	55,401	54,482.125	—	918.875	14,280	6,546	2,193	2,601	1,274	1,666
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1) 권리자별 관리처분계획

(단위 : 인)

권리자별	대 상	분 양				청 산	수용또는 협의매수	그밖의 처분
		소계	주택	상가	그 밖의 용도			
계	880	847	846	—	1	—	33	—
토 지 및 건 축 물 소 유 자	828	814	813	—	1	—	14	—
토 지 소 유 자	41	23	23	—	—	—	18	—
건 축 물 소 유 자	11	10	10	—	—	—	1	—

2)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구 분			규모별 (㎡)	건 립 세 대 수 (호)	관리처분대상자별 내역			비고	
					조합원	보류시설	일반분양		
임 대 및 분 양	공 동 주 택	39A	39.820	103	38	3	26		
		39B	39.950	103	38	3	27		
		39C	39.930	115	42	3	35		
		49	49.960	154	64	—	3		
		59A	59.720	272	192	—	11		
		59B	59.970	48	37	—	5		
		59C	59.900	10	—	—	—		
		72	72.920	102	100	—	2		
		84A	84.910	88	88	—	—		
		84B	84.910	34	34	—	—		
		84C	84.910	53	53	—	—		
		84D	84.590	32	32	—	—		
		84E	84.970	40	40	—	—		
		95	95.940	68	67	—	1		
		112A	112.650	68	16	—	52		
		112B	112.370	56	17	—	39		
		112C	112.580	56	17	—	39		
		합 계			1,402	875	9	518	임대 포함
		※보류지 조합원분양 1% (도정조례 31조)			1,124	875	9	240	임대 제외
	상 가			미정	2,522.40㎡				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

○ 용도폐지

종 류	명 칭	규 모(㎡)	국공유지(㎡)	무상양여
도로	도로	10,096	10,876	9,285

○ 신설

종 류	명 칭	규 모(㎡)	설치비용(원)
도로	중로2-461	733	5,283,264,280
	중로2-462	256	11,122,048,252
공원	봉산도시 자연공원	2,193	6,204,346,960
녹지	경관녹지	2,601	6,635,130,000

라. 기존건축물 철거예정 시기

- 관리처분계획 인가 일 이후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철거계획에 관한 내용 조합원 등에게 서면통지 예정

6. 관계서류 : 생략(서울특별시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비치서류와 같음). 끝.